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철성 의원 (찬성자 23명)

나. 의안번호 : 제 2783 호

다. 발의일자 : 2025. 5. 26.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곳곳에 스마트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시켜, 그 설치와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스마트쉼터'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6. 03. ~ 06. 07.)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쉼터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스마트쉼터를 포함시켜 설치와 관리·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 ----- ----- -----.
1. 삭 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횡단보도 <u>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5. ----- <u>쉼터, 스마트쉼터(횡단보도 쉼터 및 스마트쉼터 설치·운영</u> -----

■ 스마트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스마트쉼터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휴대폰 충전기,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공공 휴게시설로, 2020년 성동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그림] 서울시 스마트쉼터 (중구, 종로구)

- 특히 자치구들은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버스정류장 인근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말 기준 서울시 스마트쉼터 215개소 중 약 95.4%인 205개소가 버스정류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음.

[표] 스마트쉼터 운영 현황

(2025.3월 말 기준)

연번	자치구명	총대수	유지관리방식	소관부서
합 계		215		
1	종로구	2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2	중구	20	민간광고	교통행정과
3	용산구	6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4	성동구	55	자체관리	스마트도시과
5	광진구	10	자체관리	도시안전과
6	동대문구	14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7	중랑구	9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8	성북구	1	자체관리	도시안전과
9	강북구	2	자체관리	디지털정보과
10	도봉구	11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9) 공원여과과 (2)
11	노원구	1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12	은평구	12	공단위탁	스마트정보과 (11) 공간계획과 (1)

13	서 대 문 구	9	자체관리	도로과
14	마 포 구	-	-	-
15	양 천 구	3	자체관리	스마트정보과
16	강 서 구	8	자체관리	스마트정보과
17	구 로 구	2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18	금 천 구	-	-	-
19	영 등 포 구	-	-	-
20	동 작 구	6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21	관 악 구	3	무상하자기간	스마트정보과
22	서 초 구	-	-	-
23	강 남 구	32	자체관리 2 민간광고 30	환경과
24	송 파 구	1	자체관리	맑은환경과
25	강 동 구	8	자체관리	교통행정과 (7) 생활체육과 (1)

○ 그러나 서울시는 스마트쉼터가 당초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응형 쉼터라는 점에서 버스 정류소 부대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로 보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6조¹⁾에 따라 버스정류소 전후 20미터 이내 구간(정차범위)²⁾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한전박스

5. 가로변 상점

6. 가로변 화단

7.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

에 설치된 스마트쉼터는 ‘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대상 시설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임.

- 실제로 일부 스마트쉼터는 보도 폭이 협소한 위치에 설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도와의 간격이 좁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버스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민원이 접수된 사례³⁾도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스마트쉼터를 버스정류소 정차범위(전후 20m) 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⁴⁾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스마트쉼터는 시민 이용 만족도가 높고, 추가 설치 요청⁵⁾도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설치 제한보다는 대중교통 이용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3) ‘연서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승하차 불편’, 응답소 민원, 2024.9.13..

‘스마트쉼터 명확한 시설 기준 마련 요청’, 국민신문고, 2024.11.11..

4) ‘정류소 정차범위 내 스마트쉼터 설치 제한 안내’, 버스정책과-7397, 2024.2.27..

‘정류소 정차범위 내 스마트쉼터 설치 제한 안내’, 버스정책과-6108, 2024.8.7..

‘버스정류소 정차범위내 쉼터 설치 제한 안내’, 버스정책과-12584, 2025.4.2..

‘버스정류소 정차범위내 쉼터 설치 제한 안내 및 사고사례 전파’, 버스정책과-16206, 2025.4.25..

○ 자치구 협조사항

- 시내버스 정차범위 내 쉼터 등 시설물 설치 제한

※ 정차범위 : 보도에 시내버스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20미터 이내인 곳

- 區 교통주무부서(교통행정과 등)에서는 타 부서(생활안전과, 스마트도시과 등)에서 쉼터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 및 관리 철저

※ 특히, 시민 안전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스마트쉼터는 신속히 이전 및 철거

5)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쉼터 설치 요청’, 상상대로서울 시민의견, 2023.7.17..
‘심야시간대 N버스 운행구간 스마트 쉼터 설치 요청’, 응답소 민원, 2024.5.1..

■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의견

- 안 제2조제5호는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서울시가 통일성 있게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규정상 스마트쉼터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각 자치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이나 자체 방침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가 및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표] 참조).

[표] 자치구 스마트쉼터 설치 근거

연번	자치구명	자체 설치근거
1	종로구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4조
2	중구	○ 행정기본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
3	용산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
4	성동구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5	광진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등)
6	동대문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도로법제2조제2항가목
7	중랑구	○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확대조성계획 수립추진 ○ 중랑스마트쉼터확대설치종합계획
8	성북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
9	강북구	-
10	도봉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호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도로법 제2조의 2호 가 ○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 제2조의 2호,제5조 1항의 6호
11	노원구	○ 자치안전과-18723호(2021. 7. 23.) "2022.洞(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운영계획" ○ 미디어홍보담당관-12920호(2022. 2. 22.) "2022년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운영계획"
12	은평구	-

13	서 대 문 구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편의시설
14	마 포 구	-
15	양 천 구	○ 서울시 주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에 따른 '2021년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계획'
16	강 서 구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 선정』 -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사업 선정(2023. 7. 12.) ○ 2022~24강서맞춤형스마트도시이행계획(스마트그린쉼터확대·운영)
17	구 로 구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18	금 천 구	미설치
19	영 등 포 구	미설치
20	동 작 구	-
21	관 약 구	○ 관악구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 ○ 2022하반기지역현안특별교부세선정
22	서 초 구	미설치
23	강 남 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4	송 파 구	○ 서울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강 동 구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 서울특별시시내버스정류소등의정비및관리조례

- 이로 인해 자치구별 설치 기준이 상이한 가운데 무분별하게 설치된 스마트쉼터는 공공성과 편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 따라서, 스마트쉼터를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서울시가 통일된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히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조치라 사료되며,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